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의원발의 관계기관 검토의견

※ 담당자 : 강서구(문화체육과 오세웅 02-2600-6634)

의원발의 조례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..	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 직 위원 임기는 2년 으로하며 <u>연임할 수</u> 있다...	-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규정 명기 필요